

# 제51차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

2017 . 12.

문서번호	기획경영팀-3976	선임	팀장	경영본부 장	DDP경영 단장	대표이사	
결재일자	2017.12.22.	12/20 손현정	12/20 代서혜영	12/20 代지서해	12/21 유석윤	12/22 이근	
공개여부	공개	협 조		책임			
방침번호	대표이사방침 제 (5288)호		12/20 정은석				

추진근거	- 2017이사회 연간 운영계획(안)(대표이사방침 제1098호, 2017.3.27.)		
대 내 외 협력현황	부서(단체)명	협약내용	협약결과
	서울시 디자인정책과	상정안건 협의	협의중
	서울시 공기업담당관	상정안건 협의	협의중

서울디자인재단 (기획경영팀)

# 사전 검토항목

※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✓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토여부 '✓' 표시	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시 민 :	유 □ ( ) 무 ■
	이 해 당 사 자 :	유 □ ( ) 무 ■
	전 문 가 :	유 □ ( ) 무 ■
	옴 브 즈 만 :	유 □ ( 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법 령 규 정 :	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 기타 □ 무 ■
	기 타 :	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
		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장애인 □ 디자인 □
	갈등발생 가능성 □ 유지관리 비용 □ 무 ■	
타 자 원 의 활 용	중 앙 부 처 :	유 □ ( ) 무 ■
	민 간 단 체 :	유 □ ( ) 무 ■
	기 업 :	유 □ ( 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관 계 기 관 :	유 ■ (서울시 디자인정책과, 공기업담당관) 무 □
	관 련 단 체 :	유 □ ( ) 무 ■

# 제51차 정기이사회 개최 계획

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과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·의결을 거쳐 재단운영에 반영하고자 함

## 1. 개최개요

- 일 시 : 2017. 12. 22.(금) 11:00
- 장 소 : DDP살림터 2층 북세미나룸
- 참석자 : 14명 중 12명 참석 (이사 11명 참석으로 과반 성원수 만족)
  - 이 사(13) : 이사장, 대표이사, 선임직이사(8), 당연직이사(2), 근로자이사
  - 감 사(1) : 당연직감사
- ※ 고미석, 박춘무 개인일정으로 사전 불참통보
- 배석자 : 경영단장, 본부장/소장, 안건상정 부서장, 서울시 관계부서 등
- 진행순서

순서	시 간	내 용	비 고
1	11:00 ~12:30	이사회 개최선언 및 인사말씀	이사장
2		상정안건 심의·의결 토의	이사장
3		보고안건 보고	경영단장
4		폐회 선언	이사장

## 2. 회의안건

### ■ 상정안건(5건)

구 분	상정안건	번호	비고
1	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	의안번호 제150호	시장승인
2	안전분야 용역관리 계획	의안번호 제151호	이사회승인
3	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	의안번호 제152호	이사회승인
4	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	의안번호 제153호	이사회승인
5	DDP대관규정 일부 개정	의안번호 제154호	이사회승인

■ **보고안건(2건)**

1. 2017년 주요 사업실적보고
2. 재단 내규 개정 2건 보고
  - 1) 공무국외출장심사 내규 개정
  - 2)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 내규 폐지

□ **상정안건 내용**

① **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(안)** \* 예산 심의 완료 후 자료 별도송부

○ **제안이유**

-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25조에 의거, 2018년 예산 및 사업계획(안)에 대해 이사회의 심의.의결을 얻고자 함

○ **주요내용**

- 예산규모 : 50,137백만원('17년 60,417백만원 대비 17.0% 감소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2018			2017	증감액	증감율(%)
	합계	출연금	자체재원			
총예산	50,137	30,186	19,951	60,417	△10,280	△17.0%

- '18년 세입.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 입 예 산		50,137,099	세 출 예 산		50,137,099
① 자체사업수익		17,254,125	① DDP운영		15,845,965
② 출연금		30,186,000	② 패션봉제사업		15,541,000
③ 이자수익		88,600	③ 재단운영사업		18,306,760
④ 전기이월금		2,608,374	④ 예비비		443,374

**세 입**

- '18년도 예산(안) 총 세입규모는 50,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% 감소

- DDP 운영수입 등 자체사업수익은 17,25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.3% 감소

- ▶ DDP 운영수입 15,846백만원, 서울패션워크수입 1,284백만원, 디자인문화상품판매수입 74백만원, 기타 50백만원 등

- 출연금 수입은 30,18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.9% 감소

- 전기이월금은 2,6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6.4% 감소
  - ▶ DDP 이월금 154백만원, 패션봉제 이월금 370백만원, 재단운영 이월금 2,084백만원

## 세 출

- 2018년 총 세출규모는 DDP운영사업(17,834백만원)을 포함한 50,13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.0% 감소
  - DDP 운영사업은 15,846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.9% 감소
  - 패션봉제 및 재단운영사업은 33,848백만원으로 '17년 시의회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 외에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재단 여건에 맞게 추가 편성하였음
  - 예비비는 44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6.2% 증가

## 2 안전분야 용역관리 계획 건

### (1) DDP 시설통합운영 용역관리 계획(안)

#### ○ 제안이유

- 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(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-8578, 2016.7.27) 지침에 따라, DDP시설통합운영의 신규 외주 건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市の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

#### ○ 용역관리 추진 배경

- 1) DDP 건축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분야별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
- 2) 전문 인력의 정규직화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매뉴얼 및 추가예산의 미확보

#### ○ DDP 시설통합운영 용역관리 사업계획(안)

- 용역기간 : 2018. 3. 1. ~ 2019. 12. 31.(22개월)
- 사 업 비 : 15,797,428천원(서울시 계약심사와 심사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)
- 관리인원 : 174명

시 설												안 전			환 경	
파트장	행정	상황	기계	방재	전기	통신 AV	건축	가 구	안내 투어	콜센터	주차	파트장	보안	홀매니저	파트장	미화
1	2	10	8	4	8	8	10	2	17	2	9	1	42	3	1	46
<b>81</b>												<b>46</b>			<b>47</b>	

- 시설통합운영 용역근무자 임금단가 조정

- 2018년 중소기업업 노임단가 적용 : 현재까지 2014년 중소기업업 노임단가 적용(3년간 임금인상 무)
- 최저급여자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: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(시급 9,211원/월 1,925,099원) ※ 생활임금 : 기본급 + 급식비 + 교통비(시간외, 휴일수당, 연차금 등 미포함)

- 사업발주

- 입찰방식 : 제한경쟁입찰
- 낙찰자 결정 :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(낙찰하한율 87.745%)
- 소요예산 : 금일백오십칠억구천칠백사십이만팔천원정(₩15,797,428,000)
- 계약기간 : 2018. 3. 1. ~ 2019. 12. 31.(22개월)
- 공고기간 : 2017. 12. 21. ~ 2018. 1. 3.(14일간) - 예정

## (2) 서울새활용플라자 종합시설운영 용역관리 계획(안)

### ○ 제안이유

- 투자·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(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-8578, 2016.7.27) 지침에 따라, DDP시설통합운영의 신규 외주 건의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하여 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市の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

### ○ 용역관리 추진 배경

- 1)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운영위탁은 전문시설위탁업체로 운영관리를 맡겨 법정 선임 자격자 확보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으며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거쳐 전문위탁운영을 함
- 2) 건물준공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했으며 시설, 보안, 미화 인력 정원 확보의 어려움

### ○ 사업계획(안)

- 용역기간 : 2018. 3. 1. ~ 2019. 2. 28(12개월)
- 사업비 : 1,110,000천원 (서울시 계약 심사과 심사에 따라 사업비 변경 가능)
- 관리인원 : 25명

시 설	안 전	환 경
9	8	8

- 사업발주

- 입찰방식 : 제한경쟁입찰
- 낙찰자 결정 :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제(낙찰하한율 87.745%)

- 소요예산 : 금십일억일천만원정(W1,110,000,000)
- 계약기간 : 2018. 3. 1. ~ 2019. 2. 28.(12개월)
- 공고기간 : 2018. 1. 29. ~ 2. 7.(10일간) - 예정

### ③ 임직원 퇴직금규정 일부 개정의 건

※ 『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(공기업담당관-9317, 2017.07.25.)』 후속조치 사항

#### (1) 제8조(퇴직급여의 지급제한) : 삭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퇴직급여의 지급제한)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. 1.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의 받을 때 2.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.	제8조(퇴직급여의 지급제한) 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. 1. 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의 받을 때 2.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 ② 형사재판이 계류 중에 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 지급을 보류한다.

#### ○ 개정이유

- 『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』에 따라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법으로 보장 받으므로 “재직 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때,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할 때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률상 최저기준은 퇴직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되어야 할 것임. 상위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8조 내용을 삭제함

### ④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의 건

※ 『투자출연기관 규정정비 및 표준안 제정 컨설팅 (공기업담당관-9317, 2017.07.25.)』 후속조치 사항

#### (1) 제5조(이사회 소집) 3항2호 : 재적이사 “3분의 1이상” ⇨ 재적이사 “과반수 이상”

##### <서울디자인재단 정관>

제26조(이사회 소집) ③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이사회회의 소집)</p> <p>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li> <li>2. 재적이사 <b>3분의 1 이상</b>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</li> <li>3. 정관 제10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</li> </ol>	<p><b>제5조(이사회회의 소집)</b></p> <p>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</li> <li>2. 재적이사 <b>과반수이상</b>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</li> <li>3. 정관 제10조제 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</li> </ol>

## ○ 개정이유

- 『서울디자인재단 정관』 제26조(이사회회의 소집) 3항에 의거하여 임시이사회 소집 규정을 정관의 내용과 일치시키되 『이사회 운영규정』 제13조(개의 및 의결) 1항 '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' 의 내용을 참고해 정관 내용 기준인 "과반수이상"으로 개정함

### [참고자료]

#### <이사회 운영규정>

제13조(개의 및 의결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# <행정자치부 공기업과 '지방공기업설립기준' 2015.7.20>

제27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(2) 제15조(의결방법의 특례) 1항

: 부의할 안건 중 "경미하거나" ⇨ 부의할 안건 중 "**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**"로 변경, "**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**" 추가

<별표3> 양식에 "**부의안건(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) : 별첨**" 추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의결방법의 특례)</p> <p>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, 대표이사, 감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<sup>1)</sup>의 절차를 생략하고,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 &lt;별표3&gt; 서식에 의한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5조(의결방법의 특례)</b></p> <p>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중 <b>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</b>, 대표이사, 감사의 요청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5조의 절차를 생략하고, <b>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</b> &lt;별표3&gt; 서식에 의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결의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.</p>



○ **개정이유**

- 이사회 의결방법의 특례(서면결의)에 해당하는 안건으로 "경미한 사항"의 의미는 해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행정자치부 지방공사의 서면결의 요건을 참고하여 개정함
- <별표3>양식 하단에 "부의안건(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) : 별첨" 내용을 부기하는 방법으로 서면결의 절차를 양식 자체에 의해 완결될 수 있도록 함

<참고자료 : 행정자치부 '지방공기업 설립기준' 2015.7.20>  
 제28조(서면결의)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**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**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< 별표 3 >

## 제 차 (정기·임시) 이사회 서면결의서

안건명 :

상기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15조에 의거 서면동의를 얻고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아래에 기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 .

재단법인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(인)

성 명 (날 인)	찬 성	반 대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이 사		

※ 부의안건(서면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유 포함) : 별첨

- 1) 제5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, 이사장이 소집한다.
  - ②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한다.
  -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
    1.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2.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할 때
    3. 정관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  -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그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서명·날인한 긴급통지 사유서를 별도 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.

**(3) 제16조(권한의 위임) 3항 :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**

⇒ **“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(중략) 위임장에 명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”로 변경**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권한의 위임)</p> <p>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b>&lt;별표 6&gt; 서식의 위임장을 작성 및 제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</b></p>	<p><b>제16조(권한의 위임)</b></p> <p>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제7조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p> <p>② 대표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<b>당해 회의에 한정하여 &lt;별표6&gt;의 위임장을 작성·제출함으로써 제7조의 의결사항 중 위임장에 명시한 특정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</b></p>

○ **개정이유**

- 이사가 불가피하게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임하되, 사전 합의되지 않은 불특정 권한을 모두 위임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의 범위를 이사회 의결사항(제7조) 중 특정 사항으로 제한함.

2) <이사회 운영규정>

제7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
2.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6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7. 재산의 관리, 취득, 제한, 처분에 관한 사항
8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이사장, 대표이사,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
10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11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<신설 2016.08.23>
12. 기타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<개정 2016.08.23>

## 5 DDP 대관규정 일부 개정의 건

### (1) 2018년도 대관료 조정

: 알림관, 디자인 전시관 ⇨ 4.5%인상

대 관 공 간		용도	면 적 (㎡)	대관료(원)	
				현행	개정안
알림터	알림1관	행사전용관 (용도제한 없음)	2,992 (906평)	19,445,000	<b>20,321,000</b>
	알림2관		1,547 (468평)	10,059,000	<b>10,512,000</b>
	국제회의장		414 (125평)	2,693,000	<b>2,815,000</b>
	준비실		238 (72평)	1,547,000	<b>1,617,000</b>
배움터	디자인전시관	전시전용관	1,216(368평)	2,797,000	<b>2,923,000</b>

※ 알림터 부속시설 포함

※ 알림터, 배움터 디자인전시관을 제외한 나눔관, 야외공간 등의 대관 공간은 상대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대관료 인상하지 않음

### ○ 개정이유

- 전년도와 대관료 동결되어 『DDP대관규정』제9조(대관료) 1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대관료 인상 필요함 ※ 2018년도 대관료 조정 근거 자료 참고

## [2018년도 대관료 조정 근거 자료]

- DDP대관료는 매년 시설유지비, 감가상각비, 인건비 등 원가요인을 고려하여 정함(DDP대관규정 제9조1항)

<주요 원가 요인 인상률>

주요 항목	2017년도	2018년도	산출 근거
인 건 비	3.5%	3.5% 예상	사업계획서 기준
도시가스	14.1%	3~5% 예상	연 납부액 기준
전 기 료	3.5%	3~5% 예상	연 납부액 기준
상하수도	-12.8%	3~5% 예상	연 납부액 기준

- MICE 산업 활성화 제고 및 전시업계 수년째 관람료 현상 유지 기조를 감안하여 유사 업계 대관료 4.5% 인상 수준에 맞춤

<유사업계 비교 자료>

① 유사 업계 2017년도 대관료 인상률 (DDP만 동결)

■ COEX : 6.8% 인상

구 분	2016년도	2017년도	인상률
HALL A 요율단가	2,050원/m <sup>2</sup>	2,190원/m <sup>2</sup>	6.8%

※ 산출 근거: COEX 홈페이지 공개 자료(회의실, 임대료 안내)

■ 예술의전당: 4.5% 인상

공 간	면적(m <sup>2</sup> )	2016 년도	2017 년도	인상률
한가람미 제 1 전시실	721	966,000 원	1,010,000 원	4.5%
슬관 제 2 전시실	486	651,000 원	680,000 원	4.5%

※ 산출 근거: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개 자료(대관 규정)

② DDP 대관료 유사 업계 수준 비교

용도	DDP 대관료		비교 시설 대관료		비 고
국제회의, 행사	알림1관	6,500원/m <sup>2</sup> (총면적 2,992m <sup>2</sup> )	COEX (그랜드볼룸 ROOM#101~105)	9,734원/m <sup>2</sup> (총면적 1,817m <sup>2</sup> )	- 대관료 차이 주요 이유 · COEX의 경우 공간조성 비용 등 반영 : 의자, 가구, 매트 등
전시	디자인전시관	2,797천원/일 (총면적 1,216m <sup>2</sup> )	예술의전당 (한가람미술관 제1~2전시실)	2,556천원/일 (총면적 1,207m <sup>2</sup> )	장기 전시 기준 (3개월 이상)

※ 산출 근거: COEX, 예술의전당 홈페이지 공개 자료 분석

③ 전시업계 최근 3년간(2015~2017년도) 평균 관람료

구 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
평균 관람료 (전년대비 증감액)	13,857원 -	13,200원 (↓657원)	13,222원 (↑22원)

※ 산출 근거: '15~'17년도 DDP, 예술의전당,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 게재 유료 전시 관람료 조사

보고안건 : 2건

1. 공무국외출장 심사내규 개정 (17.11.17일자 개정)

- 개정사항 : 제19조(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) 신설
- 개정사유 : 공무국외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촉진 필요
-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 안
<신설>	<신설>

현 행	개 정 안
	<p><b>제19조(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)</b></p> <p>① 출장자는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·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보고서에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출장자는 공무국외여행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하고,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좌석승급(업그레йд) 및 부가서비스 이용에 활용하여야 한다.</p> <p><b>1. 좌석 승급 가능 기준:</b></p> <p>가. 국제회의, 통상협상 등(단순 현지조사,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)의 대표단의 일원</p> <p>나.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(편도)이상</p> <p>다.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(척추질환 등) 보유</p> <p>*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</p> <p>라. 동행하는 비즈니스 좌석 대상자와 떨어져 혼자 이코노미 좌석에 탑승</p> <p>마.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</p> <p><b>2.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:</b>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, 초과수하물, 리무진버스, 렌터카,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대표이사가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사전 출장 계획 방침에 이를 명시하여 공적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할 수 있음. 단, 결과보고 시 이용내역 및 증거서류 제출 필요</p>

## 2.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내규 폐지(17.12.06)

- 폐지사유 : 『광화문광장 시설물 사용허가 기간 만료에 따라 원상반환 요청(역사도심 재생과-8930, 2017.07.11.)』에 의거 광화문 한글누리 운영을 종료하고 폐업신고 완료함에 따라 광화문 한글누리 대관 운영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3. 행정사항

- 서울시 주무과 및 공기업담당관 사전협의 진행
  - 기 간 : 2017. 12. 7.(목)~21.(목)
  - 내 용 : 상정안건 검토(이사회 통지 공문발송 및 자료 검토요청)
  
- 이사회 소집 통지 완료
  - 주요내용 : 이사회 개최 개요 및 안건자료 이메일 송부
  - 통지일자 : 2017. 11. 22(수), 2017. 12. 20(수)
  
- 이사회 결과 공유
  - 의사록 공개 : 참석이사 대상으로 사전 리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예정

### 4. 소요 예산

정책사업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기안금액
일반관리비	운영경비	운영경비	회의운영비	3,300,000
일반관리비	운영경비	운영경비	회의운영비	600,000
일반관리비	운영경비	운영경비	회의운영비	2,400,000
합 계				6,300,000

#### ■ 세부내용

- 이사회 참석수당 : 3,300천원 (총 11명, 대표이사 제외)

구분	성명	소속 및 직위	지급액(천원)
1	안상수	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	300
2	이남식	수원대학교 석좌교수	300
3	이충기	서울시립대 건축학부교수	300
4	좌세준	법무법인 한맥 변호사	300
5	한문철	라이나전성기재단 이사	300
6	정승연	서울디자인재단 패션산업팀 선임	300
7	이원목	서울시 재정기획관	300
8	방은진	모베터필름 대표	300
9	변서영	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	300
10	김승연	네이버 디자인센터장	300
11	서정협	서울시 문화본부장	300
계			3,300

- 속기사비 : 600천원

구분	품 목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
1	속기사비	중앙속기사 (2시간 이상)	600
계			<b>600</b>

- 기타 운영비 : 2,400천원

구분	품 목	산출내역	지급액(천원)
1	자료인쇄	인쇄비 1식 (30부)	1,000
2	회의장 운영비	500,000원	500
3	식대	30,000원 × 30명	900
계			<b>2,400</b>

[붙임]

1. 51차 이사회 안건자료(예산내용 비포함)1부. 끝.